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2023년 3월 7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3년 1월 13일  
나. 제안자: 박주선 의원 외 16명  
다. 회부일자: 2023년 1월 20일  
라. 상정일자: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3. 7.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박주선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본 조례의 상위법이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서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2. 6. 10.)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,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의 권한 변경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# □ 주요내용

- 가. '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'로 제명 변경  
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법령 용어 정비

다. 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대상 및 내용 추가 (안 제6조)

라.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 (안 제10조)

마. 환경교육과 관련한 경비지원 조항 신설 (안 제12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편성

다. 해당부서: 녹색환경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1. 13. ~ 1. 25.) 결과 의견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#### 가. 개정취지

○ 상위법인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 개정(2022. 6. 10. 시행)됨에 따라,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 개정내용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
○ 안 제6조에서 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대상<sup>1)</sup>으로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,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○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환경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

제9조(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)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○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

제10조(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 개발 및 보급
  2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  3.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·협력
  4.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
  5.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  6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안 제12조에서는 환경교육과 관련한 경비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

1)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

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 
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 
라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우리 구 환경교육<sup>2)</sup>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2008년 제정되었으나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환경교육을 강화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,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
- 개정 조례안 또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더불어 환경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,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취지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---

2) 우리 구 환경교육 추진실적(2022년)

- 환경보전시범학교(초중등 학생 대상): 113회, 총 2333명
- 어린이 환경교육(7세 유치원생 대상): 42회, 총 850명

## 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환경교육법 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교육”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환경교육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·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.
 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- 라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3. “사회환경교육”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
제4조(책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
-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·도계획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
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(이하 “공공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0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**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10.>

1.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

1의2.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

2.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
3.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4. 환경체험·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6. 10.>

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

2.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

3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[제목개정 2022. 6. 10.]

**제13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국가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·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**제14조(사회환경교육의 실시)**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 
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
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21조(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 
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 있거나 개발·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.  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.  
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  
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.  
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** ① 시·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

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 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  3.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  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“지역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,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8조(경비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·법인·어린이집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10.>

**제29조(포상)**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,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·단체·개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수 있다.

**제31조(업무의 위탁)**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
2.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
3. 국공립 교육시설
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
5.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